

#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46호

**이달의 주요뉴스**  
인턴십 프로그램,  
큰 호응 속에 확대 운영

2012. **8**



# CONTENTS

2012년 8월. 제146호



03

이달의 주요뉴스  
03 인턴십 프로그램,  
큰 호응 속에 확대 운영



06

내 마음의 책  
04 “중국인 이야기”의 매력적인 인물,  
생생한 현장감



08

위원단상  
06 위대한 자연 앞에 존재의 의미를 깨닫다

실무수습 후기  
08 언론중재와의 만남

기고  
09 언론은 소통 매체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판례토크  
10 막연한 의혹제기라면 언론사에 증명책임을

이용재의 잡문 노트  
11 평양냉면의 이해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 큰 호응 속에 확대 운영



▲ 7월 23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 계성고 학생들이 대구중재부 장익현 중재위원(변호사, 앞줄 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해가 갈수록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0년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인턴십 프로그램은 초기 서울·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다가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턴십 프로그램은 40여 회에 걸쳐 약 1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교육과 심리실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7월 23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 계성고 학생들은 심리실 견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나중에 기자가 된다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김현정 학생은 “장래 희망이 기자라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다”며, “오늘 배운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으며, 특히 사생활 침해 사례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중재부 장익현 중재위원(변호사)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 이수증을 수여하면서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법원의 판결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의방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 “중국인 이야기”의 매력적인 인물, 생생한 현장감



## 이종욱

現 북카페 반디 운영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2005. 3. ~ 2006. 8.)  
 한겨레, 문화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기자

나이에 따라 책 읽는 습관도 바뀌는 듯하다. 언론사에서 일할 때 책 읽기는 오로지 필요에 의해 지식, 정보, 지혜를 꺾어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요즈음은 ‘즐기기 위한 독서’를 한다. 재미를 지향하니 ‘책 읽기’가 즐거운 행위가 되었다. 어떠한 명저라도 한 장(章)이 지나도록 읽기에 버거우면 예전처럼 억지로 읽어내려고 애쓰지 않고 아예 접어버린다.

김명호 교수가 펴낸 “중국인 이야기 1”(한길사, 2012)의 가장 큰 미덕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한 쪽밖에 안 되는 ‘책을 내면서 덧붙이는 말’에 담겨 있다. “40년 가까이 중국은 나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그냥 놀이터였다.” 우리는 그저 그가 펼쳐놓은 놀이마당에 들어가 흥겹게, 그러나 마음에 새길 것은 새기며 즐기만 하면 된다.

이곳에서 위안스카이(袁世凱), 쑨원(孫文), 후스(胡適), 마오쩌둥, 장제스와 장징궈(蔣經國), 류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푸이(溥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만이 아니라 꽤 생소한 캉성(康生), 류원덴(劉文典), 추안핑(儲安平), 차이어(蔡鏗)를 비롯해 사상가 장선푸(張申府), 미모의 혁명가 세쉐홍(謝雪紅), 여성 외교관 궁평(龔澎), 상하이 황제 두웨성(杜月笙), 걸출한 화가 쉬베이이홍(徐悲鴻)·치바이스(齊白石)·예첸위(葉淺予) 등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인물들을 만나 즐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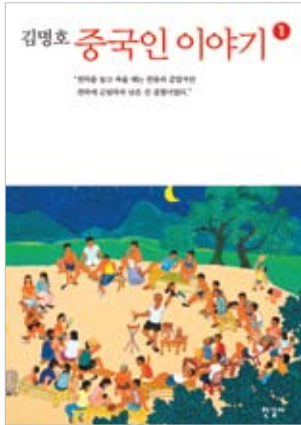
인사를 나눌 수 있다. 중소 외교사의 숨은 일화를 통해 스탈린의 독특한 풍모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알렉산더 포우프가 그의 시 ‘인간론’의 첫머리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김명호 교수에게도 중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가 처음 펴낸 책은 ‘중국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인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인물론이다. 중국 근현대사의 주역뿐 아니라 밑거름이 된 다양한 인물들의 면모를 일화와 함께 간결하게, 그러나 역동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이 책은 인물론이다. 중국 근현대사의 주역뿐 아니라 밑거름이 된 다양한 인물들의 면모를 일화와 함께 간결하게, 그러나 역동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책·잡지·영화·노래·경극·새벽시장, 크고 작은 음식점 돌아다니며 즐기지만” 한 탓인지, 지식 과잉도 없고, 지식 과시도 없다. 폼 재지 않고, 기교와 재주를 부리지도 않았다. ‘인용을 위한 인용’도 없다. 일기나 편지, 증언(특히 20여 년간 ‘문화노인’들이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회고록, 연보, 보도 등 풍부한 일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인 생생한 현장감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의 매력은 ‘간결한 인용’과 거의 모든 에피소드의 감칠맛 나는 끝맺음이다.



이 책의 매력은 ‘간결한 인용’과 거의 모든 에피소드의 감칠맛 나는 끝맺음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간이 만든 재난(人禍)이다.” 1962년 1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7000인 대회’에서 국가주석 류사오치가 대약진운동을 지지한 마오쩌둥을 완곡하게 비판한 말이다. 흐루쇼프가 “마오쩌둥이 방구 한

번 시원하게 갈기려다 바지에 똥쌌다”며 빈정댔 정도로 실패한 대약진운동이었지만, 이 말에 마오쩌둥은 심기가 불편해진다. “후계자로 여겼던 류사오치의 충성심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몇 해 뒤, 홍위병들이 류사오치가 사는 중난하이로 포위하고 낮밤 없이 팽과리를 두드리며 구호를 외쳐댔을 때, 경호원들이 잡지는 시간만이라도 중단시키려 하자 마오쩌둥은 “내버려둬라. 나는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게 좋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에는 시끄러운 법이다.”라며 제지했다. 류사오치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 과정이 현장 중계하듯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충고는 어떤가? “객관과 겸손은 미덕일 뿐이다. 편견과 오만함을 끝까지 고수하라!” 역설적이지만 경청할 만하다. 대수장가이며 목록학, 판본학의 대가인 푸쯩상(傅增湘)이 교육총장 시절에 쉬베이훙에게 한 충고이다. 쉬베이훙의 재능을 알아본 푸쯩상은 그를 프랑스로 유학보냈고, 귀국한 쉬베이훙은 1929년 1월 베이핑예술학원(베이징 미술학원의 전신) 원장에 취임했다. 쉬베이훙은 34년이나 연상인 노인 치바이스를 삼고 초려 끝에 교수로 모셨다.

목수 출신에 학교라고는 다닌 적이 없고 자기 때문에 분란이 생길까 두렵다며 거절하는 치바이스에게 쉬베이훙은 이렇게 말했다. “교수의 자격은 진실과 실학이다. 출신은 따질 필요가 없다. 서양 유학을 마친 사람 중에는 나를 포함해 허명만 등에 지고 돌아온 사람이 많다. 전통과 민간 회화의 기교를 융합해 독특한 풍격을 창출한 예술가는 선생밖에 없다. 학생들도 배우고, 나도 배우겠다.”

이렇게 비롯된 쉬베이훙과 치바이스의 친교는 이 책에서 사뭇 감동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이다. 쉬베이훙을 만나지 못했다면 치바이스가 국화대사(國畫大師)나 인민예술가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1946년에 그린 ‘송백고립도(松柏高立圖)’는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경매에서 4억 2550만 위안(약 718억 원)에 낙찰되었다. 1928년에 열린 전시회에 내놓은 치바이스의 그림은 8위안(元)이었다. 구석에 전시된 치바이스의 작품을 발견한 쉬베이훙은 책임자를 불러, 중앙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옆에 걸게 하고, 가격표에 동그라미 한 개를 덧붙인 뒤 “쉬베이훙이 정한 가격”이라는 쪽지를 써 붙였다. 그의 작품에는 70위안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감칠맛 나는 끝맺음의 예를 하나만 들자.

“장징장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쑨원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지만 장제스를 만난 것은 불행이었다. 마오쩌둥도 여러 번 만났지만 그의 행·불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난 장징장이었지만 최후의 승자를 보는 눈은 없었다.”

‘현대판 여불위(呂不韋)’ 장징장(張靜江)을 쑨원은 ‘혁명성인(革命聖人)’이라 불렀다. 장제스에게 당권을 물려주고 본격적인 중국 건설에 나선 장징장은 “건설이 따르지 않는 혁명은 정치 불량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겼다. 만년에 불교에 심취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음흉하고, 더럽고 난폭한 것은 정치와 여자의 생식기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중국인 이야기 1”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처럼 시대 순서로 쓰이지 않았다. 이것은 ‘즐기기 위한 독서’를 하는 사람에게 단점이 아니다. 제목이 끌리는 것부터 읽어도 되고, 재미없으면 그 에피소드는 읽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 북카페 반디 외부 전경



류석호 위원  
경기중재부  
전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

## 위대한 자연 앞에 존재의 의미를 깨닫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지난 6월 UN이 처음으로 개인건강, 가정, 직장 안정성, 정치적 자유, 정부 부패도 등 삶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행복한 나라 톱10'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순이었다.

마침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 동안 아내와 함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등 북유럽 6개 나라를 다녀왔다. 이 중 4개국 UN이 꼽은 행복한 나라 10결. 이번 여행은 그것들 사실로 확인하고 절감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스칸디나비아 4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을 둘러보고 가장 부러웠던 것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그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노르웨이의 경우, 이 나라의 자연자원은 과연 세계 유일, 최고였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이라는 뜻의 '피오르(fjord)'는 산골짜기 사이를 가득 채웠던 빙하가 움직이면서 깎아낸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구불구불 좁고 긴 지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런 해안선을 이으면 약 1만 8,000km(최고 수심 1,308m)로 지구 둘레(약 4만 km)의 절반에 이른다.

고요한 호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빙하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투명한 하늘과 바다, 숲한 자작나무 숲, 수많은 폭포와 강 등 빼어난 자연은 일대 파노라마였다. 다만, 계



▲ 노르웨이 플롬~미르달 구간의 산악철도 여행 중 간이역에서 아내와

절적인 한계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백야 현상과 빨강 초록 하양 등 아름다운 빛을 내는 오로라(극광)를 감상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특히,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과는 달리, 스칸디나비아 4국은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을 그냥 받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자연환경을 심분 활용,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요트와 보트를 즐기고, 트래킹과 자전거타기가 일상화돼 있었다.

연어와 청어 등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을 즐기고, 각종 스포츠와 여가활동으로 비만인을 좀처럼 볼 수 없어 '똥똥한 사람은 여행객'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건강에 나쁜 담배와 술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노르웨이의 경우, 담배 한 갑의 가격이 우리의 10배에 달했다.

금발과 파란 눈, 큰 키의 북게르만계가 다수인 스칸디나비아인들(핀란드는 우랄알타이어계 핀족)은 세계에서 가

장 매력적인 체격조건을 갖췄다. 왕년 ‘은막의 여왕’ 그레타 가르보, 잉그리드 버그만 등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현재 북구 여성들은 하얀 피부보다 선탠 등으로 까무잡잡하게 태운 피부를 부와 미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특권과 반칙, 부패와 비리가 통하지 않는 국민성과 투명한 사회제도는 단연 압권. 국왕이 손수 운전을 하고, 왕비가 직접 장보기를 하거나 왕세자비가 유모차를 끄는 것이 자연스럽고, 왕가의 결혼에서도 직업과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스웨덴의 왕위 계승 1순위 빅토리아 공주가 운동강사 출신 시골 청년과 결혼했고, 노르웨이의 왕세자비는 마약전과자였다 지하조직 보스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전력이 있단다.

청정한 자연을 닮아 검소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이들의 생활패턴은 환경산업과 의약, 디자인 등에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디자인의 경우,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품의 기본에 충실하며, 견고한 특유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가구, 패션, 액세서리, 식기, 인테리어 등은 최근 친환경 실용주의 경향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4국은 비록 인구는 500만~900만명 정도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4천~8만4천달러인 ‘강소국’의 전형이었다.

결국,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자원과 잘 정비된 사회적 시스템, 정직하고 부지런한 국민성, 여유가 있으면서도 소박 검소한 생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건강한 생활태도 등이 경쟁력이 아닐까 한다.

덴마크는 자전거문화가 생활화된 대표적인 나라.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자전거 신호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자전거 뒤 비상등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수도인 코펜하겐 시청은 ‘The city of bikes’라는 무인 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돈 약 4천원에 종일 무료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물위의 도시로, ‘북구의 베네치아’란 별칭답게 세련된 감각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인상적이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답게 각종 옴부즈만제도가 활발한 이 나라는 이미 1628년에 길이 69m, 높이 52m의 호화전함 ‘바사호’를 건조할 정도였으니, 노벨상의 알프레드 노벨이 나오고, 전자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의 강국이 된 건 당연하

다는 생각이다.

‘자일리톨껌’의 종가인 핀란드는 노키아 휴대전화, 유리 화병(花瓶)인 ‘사보이 베이스(savoy vase)’를 비롯한 친 환경 디자인 등으로 잘 알려진 나라. 사우나의 발상지답게 3명 중 1명 꼴로 집에 사우나 룸을 두고 깊이 달린 자작나무 가지로 팔 다리 어깨를 두드려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 핀란드 헬싱키의 러시아 정교회 우스펜스키 사원에서

스칸디나비아 4국의 작지만 강한 힘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추운 기후, 적은 인구 등 열악한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오늘날 이케아(Ikea, 스웨덴), 레고(Lego, 덴마크), 노키아(Nokia, 핀란드)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일궈낸 그들의 저력은 오랜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일찍이 8~11세기 뛰어난 항해술과 특유의 용맹함으로 유럽과 러시아까지 진출한 ‘스칸디나비아의 전사들’인 바이킹(Viking)의 후예들이 아니던가!

이런 그들도 지금 최고의 사회보장제도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호조건을 노려 밀려드는 외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낸 세금을 잠식하는데 대한 불만과, 정체성 약화를 우려한 원주민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공격 등 사회적인 갈등, 성장 동력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이번 북유럽 여행은 사람과 자연, 사회제도가 각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깨끗한 자연환경이야말로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절감한 값진 기회였다. 🇰🇷



**이영자**  
제42기 사법연수생  
언론중재위원회 대체실무수습 수료

# 언론중재와의 만남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변호사사무실로 변호사 실무수습을 나가지만 나는 공공기관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책인 정정보도 등의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대체실무수습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팀에서 6~7월 두 달간 서울 제5중재부에 소속되어 조사관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위원회에서의 실무수습의 목표는 조사관 업무 체험을 통해 언론조정·중재의 실무 과정을 숙지하고, 나아가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앞으로의 법률가로서 역할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조사관으로서의 사건처리 외에도 각 부의 조사관님들로부터 언론중재법 및 관련 법규, 침해유형별 사례 소개, 손해배상청구 금액산정, 포털 및 중재사건 실무 등을 개별 주제로 하여 일주일씩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심리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6월 4일과 5일에는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및 제도 운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중재위원 연수가 열렸는데, 나는 위원장님의 배려로 참여하게 되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는지 위원회 업무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곳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얻은 최고의 혜택은 서울 7개 중재부의 조정심리를 모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나는 위원회에서 수습을 마치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는다. 특히 법원 실무수습에는 조정심리 과정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리를 참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이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여러 중재부의 심리를 참관하면서 든 생각을 종합해 보면, 조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서로의 차이를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섰더라도 심리 중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이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당사자가 더 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의견만 내세워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말할 기회를 원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말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화해가 쉽게 성립되기도 한다. 꼭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사과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보도를 명할 수는 없고 피신청인인 언론사측도 신뢰가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법리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며, 당사자들의 주장에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하는 법, 심리 중에 한쪽 당사자를 내보내고 남은 당사자를 설득하는 법,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너무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하는 법 등 다양한 조정기법을 배웠다. 그리고 위원회에 신청되는 사건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심리를 잘 진행하려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많은 심리를 참관하다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장진훈 중재부장님과 김정탁 중재위원님과과의 간담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벌써 2달이라는 실무수습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쌓은 경험은 앞으로 신뢰를 주는 법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심리참관을 허락해주신 중재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직원분들, 특히 실무수습기간 동안 좀 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신 서울 제5중재부장님과 위원님들 및 조사팀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언론은 소통 매체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이 나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교육 수료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책에서는 흔히 언론을 인체의 혈관에 비유한다고 한다. 혈관이 막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신체의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으로 신체가 마비되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정치·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경제적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저하되어 사회 역시 병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역시 주의해야 한다. 무심결에 내보낸 일회적인 언론보도라도 한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매체의 범주로 포섭되는 매체의 종류들이 다양화되고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러한 피해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후에 완전히 전보되기 어렵다는 점, 소송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조정과 중재, 특히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한 조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은 법적인 해결책보다는 윤리적인 해결책이,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적인 자제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할 때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책임이 전제된 자유’를 말하는 자들도 있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매우 좋아했던 필자로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전자의 입장이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위원회에서 2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치면서 후자의 입장에 더 가까워졌다.

물론 책임이 전제된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경시하거나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검열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에게는 명분과 방패막이가 없으면

서 감내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압력과 영향력이 존재한다. 독자와 시청자, 광고주, 정치세력 등은 물론 타언론사로부터의 경계의 눈초리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이 윤리의식 없이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경우 이러한 다원적인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명분과 방패막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위가 없는 이상 언론의 권위는 언론에 대한 ‘신뢰’로부터 생기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언론 스스로를 위한 자유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고 천부인권의 자유권을 가진다. 인간이 갖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 역시 언급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인간의 자유와는 구분되는 ‘언론(기관)의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한 수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굉장한 매력을 느껴왔고 관련 직역에서 일하는 것을 로망으로 갖고 있었다.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역시 언론과 법의 경계선상에서 일할 꿈을 생각하면 무언지 모를 설렘과 벅차오름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소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아닌가 싶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느 옛날 광고의 문구처럼 소통이란, 그리고 소통 매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단순한 전달 매체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소통 매체가 될 것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지,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언론 자체의 윤리의식과 책임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다. 🌈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 막연한 의혹제기라면 언론사에 증명책임

2003년 서울북부지원 형사법정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쟁점은 간단했다. 동네 슈퍼주인인 피고인이 중학생들에게 술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여부였으니 말이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가 금지된 이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다. 술 사러 온 학생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양심적인 가게 주인이 되레 동네에서 좀 노는(?) 학생들의 미움을 사 술 판 상점으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렀던 것이다.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년하고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상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무엇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자취나 흔적이 남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황외에는 설명이 안되기 때문이다. 증명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하기보다 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상식과 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배되고 있다. 첫째,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은 법규의 '구조'에 있다. 둘째, 법규의 구조상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리를 근거지우는 규정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은 권리행사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상대방은 권리가 소멸했다거나 권리행사를 저지할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이 대다수 학자들이 지지하고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법률요건분류설'이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에 한 번 적용해보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도의 허위성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사실의 부존재도 포함된다. 왜일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쪽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보도한 때'다. 특히, 무책임한 의혹제기라서 그 내용이 추상적일수록 방어하기 어려운데 이때도 보도의 허위성 증명책임이 정정보도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작년 9월 MBC <PD수첩> 관련 정정보도청구사건 상고심에서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특정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과 관련된 의혹이라면 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측이 먼저 소명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법리는 과거 선거사법 관련 형사재판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민사재판에 적용되었다. 우리의 선거 풍토가 워낙 혼탁하다보니 경쟁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매우 실용적인 법리인 것 같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써 입증책임 분배과정에서 생기는 난제 하나는 해결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인 부존재 사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쪽에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을 근거로 우리 법원이 드디어 법률요건분류설의 종전 입장을 아예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특정한 일시, 장소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보도되었다면 그 억울함을 벗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사실의 부존재 증명을 어떻게든 해야만 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 있는 의혹 제기가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용재의 잡문 노트

## 평양냉면의 이해

이용재 (칼럼니스트)

계절이 여름이니 냉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평양식, 함흥식, 심지어는 중국식도 있지만 이번 지면을 통해서는 평양식 냉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물론 오랜 분단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이남에서 먹을 수 있는 평양냉면이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찾아보면 평양냉면이나 그 변형을 찾는 것이 아주 어렵지도 않건만, 아직도 평양냉면은 '마니아'를 위한 냉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헤아려보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잘 알려진 것처럼 평양면발의 주재료는 메밀이다. 밀은 밀이지만 메밀에는 빵이며 국수 특유의 쫄깃함을 책임지는 글루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밀가루에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닌'이라는 두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 둘에 물을 섞어 치대면 글루텐이 형성되며 반죽에 탄성을 붙여넣는다. 그래서 소면 같은 경우 길게 늘어 가공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반면 글루텐이 부족한 메밀 반죽은 탄성이 전혀 없이 퍼석퍼석하므로, 잡아 당겨도 늘어나지 않고 조각이 떨어져 버린다. 따라서 늘이는 대신 일정량의 반죽을 떼어 내어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해 나오는 면을 바로 물에 넣어 익히는 압출 가공 방식으로 면을 뽑는다. 몇 해 전 국수의 역사를 되짚어 시청자를 즐겁게 했던 다큐멘터리 <누들 로드>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하다.

순 메밀 100%로 면을 뽑았을 경우 탄성이 전혀 없고 너무 쉽게 끊어지므로, 대부분의 평양냉면 집에서 대표 주자로 내놓는 면에는 일정 비율로 전분을 섞어 힘을 더하는데 지나치게 쫄깃거리는 경우 평양냉면으로의 정체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 만든 평양냉면이라면 면을 짧게 잘라내기 위해 가위를 쓸 필요가 절대 없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순 메

밀 100%인 '순면'은 힘없이 쉽게 끊어지는 편이지만 그 특유의 질감이 먹는 재미를 불러일으키므로 시식해보는 것도 좋다. 추가금을 내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메뉴를 확인하거나 종업원에게 확인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글루텐이 없어 퍼석한 반죽을 만들어 내는 메밀가루는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는 국산 메밀이 너무 소량이기도 하고 당연히 가격도 비싸 수지 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메밀을 주식으로 먹지 않으므로 재배를 위한 수요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밀 자급을 위해 우리밀 재배를 적극 장려했지만 소득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현실 또한 어찌 보면 비슷하다.



면도 면이지만 평양냉면은 육수도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 몫 단단히 거든다. 면도 물론이지만 육수는 더더욱 냉면에서 비법의 비중이 가장 큰 요소다. 그야말로 국민만화가 되어버린 '식객'에도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쇠고기를 중심재료로 삼으면서도 다양한 재료가 맛에 대한 각자의 몫을 담당한다. 한편, 평양냉면의 국물 맛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밍밍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사실 소위 말하는 함흥식 냉면의 새콤, 달콤, 매콤함에 지나치게 길들여진 데 따른 부작용이다. 기본적으로 가짓수와 양의 측면에서 압도하는 양념은 재료 본래의 맛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식초나 고춧가루, 설탕 등의 도움이 전혀 없이 차가운 고깃국물을 손님에게 내려면 일정 품질 이상의 재료가 아니고는 엄두조차 내기가 어렵다. 만약 육수가 고기 잡내 하나 없이 깔끔하다면, 습관처럼 곁들이는 겨자며 식초는 더하지 않아야 격이 맞는다. 취향이며 입맛도 중요하지만 음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음식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

# COMMISSIONERS



## 세대공감 7.9(친구) 데이 행사에서 대회사



**권성 위원장**(인간성 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7월 9일 청계광장에서 인추협이 주최한 '6.25 참전유공자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7.9(친구) 데이'

행사에서 대회사를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은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흥미위주의 연예보도에 대해 비평



**손영준 위원**(서울 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KBS '미디어 비평'과 인터뷰를 가졌다. 7월 6일 방영된 '미행, 폭로...막나가는 연예보

도'에서 손 위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보도는 대중의 관심을 흥미위주의 연예보도에 치우치게 하여 사회담론구조의 특성을 변질시킬 수 있다”고 비평했다.

## 변호사의 자세에 대해 강조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경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한 노컷뉴스의 인터뷰가 7월 12일 보도됐다. 위 위원은 무한 경쟁시대에 변호사가 살아남는

비결은 무한 서비스라며, 아울러 능력뿐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변호사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 위촉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7월 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제3기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의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는 케이블방송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회의체이다.

## 청주예향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권영애 위원**(충북중재부, 청주예향회원 사무국장)은 7월 2일 청주예향로타리클럽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권 위원은 “이주여성돕기, 청소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로타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모교 산청고교 방문 특강



**고규정 위원**(경남중재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은 7월 6일 산청군 산청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법의 이해'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했다. 고 위원은 산청고등학교 25회 졸업생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공부방법 등을 조언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교육 마쳐



위원회는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주간 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했다. 대학원생들은 언론조정중재 및 기사심의 실습, 중재위원과의 대화, 모의조정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 사법연수원생 위원회에서 대체실무수습



위원회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법연수원생 대체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사법연수원생 이영자(제42기)씨를 서울 제5중재부에 배치하여 조정·중재 실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 김종량 부위원장, 전북일보에 위원회 소개



김종량 부위원장은 6월 29일 전북일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피해 예방교육에 참석해 위원회를 소개했다. 이어서 심영진 호남본부장은 언론보도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조정·중재제도의 절차와 장점 등을 설명했다.

### 재미교포 학생들이 위원회 방문



여수엑스포 지원봉사차 한국에 온 재미교포 학생들이 7월 25일 위원회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강현석 교육팀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 오광건 사무총장과 간담을 가졌다.

###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6월 30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2011년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의 소송제기 현황과 처리 결과 등을 분석한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언론관련판결에 대한 통계분석과 41건의 판결전문이 수록돼 있다.

### 「선거기사심의편람」 발간



위원회는 7월 1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수록한 「선거기사심의편람」을 발간했고, 이를 심의대상 언론사에 배포했다. 편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규칙의 개정사항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공직선거법이 반영됐다.

### 위원회 사무처 인사 (2012. 7. 2.자)

▲ 전보 [기사심의팀] 권영민 [예산회계팀] 김민정 [홍보팀] 김승아 [총무팀] 박경미



#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 우유대리점 간 담합했다는 보도,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으로 조정성립

A지역신문은 모 지역의 대형마트 납품을 놓고 우유대리점 간에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기존의 우유대리점 업체들인 신청인 측이 후발 대리점의 신규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 등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기사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었고 자신은 담합을 한 적이 없으며, 정정보도문과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 백화점 쇼핑모습 게재, 손해배상으로 중재결정

B신문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연중 세일'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사진을 게시했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본 주변 지인들로부터 예단을 행사장에서 구입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당사자 간에 중재신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담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을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있는 사실은 제쳐두고 흥미위주로 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큰 일이 난 것처럼 보도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제대로 된 정정보도문이나 기사, 사과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only2mj)
- ‘번역의 어려움을 시사하다’라는 글 잘 봤습니다. 단어 하나의 해석이 아닌 큰 줄기를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특히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확고하고 명료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mlasadog)
-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머니볼’의 분석과 선택은 기대 이상의 탁월한 결과를 달성하게 하며, 사람 각각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팀웍으로 나타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k2dragk2drag)
- 제목에 사람이 있는 만큼 보다 편안한 글이길 바랐는데 민감한 주제들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내용과 딱딱한 문체가 아쉬웠습니다. 다음 호에는 독자에게 친근하고 친숙한 기사들을 기대해보겠습니다. (wizard22\_kr)

#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 공정한 언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